

「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」 개정요약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고시 제2023-6호 '23.01.20.)

2. 개정사유

- WCO 제70차, 제71차 및 제72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“HS 품목분류의견서” 개정 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

3. 주요 개정내용

① HS 품목분류의견서(WCO 제70차 HS위원회 결정)

- 허브기침 태블릿(제1704호), 테이프 조명(제8539호) 등 12개 품목

② HS 품목분류의견서(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)

- 재가수된 대구필레(제0304호), 장식용의 세라믹 얇은 단판의 벽돌(제6907호), 상호작용 회의 단말기(제8471호) 등 23개 품목

③ HS 품목분류의견서(WCO 제72차 HS위원회 결정)

- 스마트폰/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(제7007.19호), 손목에 착용하는 러닝워치(제9102호) 등 21개 품목

4. 개정안 및 개정전문 : “붙임”

5. 규제대상 여부 : 신설 · 강화되는 규제 없음

6. 시행일자 : 2024. 4. 11.